

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4. 11. 22 선고 2024가단60193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(유한) 대륜

담당변호사 정두연, 정찬우

피 고 B

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존재

담당변호사 한상익

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온누리

담당변호사 오승목, 고두희

소송복대리인 변호사 김대웅

변 론 종 결 2024. 10. 25.

판 결 선 고 2024. 11. 22.

주 문

1. 피고와 C 사이에 [별지] 기재 부동산의 1/2지분에 대하여 2023. 3. 13. 체결한 증여계약을 62,5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.
2. 피고는 원고에게 62,5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.
3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기초사실

가. 원고는 2021. 12. 21. D에게 200,000,000원을 이자 연 20%, 변제기 2022. 11. 30.까지로 정하여 대여하였고, C(이하 채무자)과 주식회사 E는 240,000,000원을 보증한도로 하여 D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.

나. 채무자는 채무초과상태에서 2023. 3. 13. 배우자인 피고에게 [별지] 기재 부동산(이하 이 사건 아파트)의 1/2 지분을 증여(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)하였고, 2023. 3. 14.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/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 한편,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보증금 270,000,000원 반환채무가 있었다.

다. 피고는 2023. 3. 21.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매대금 395,000,000원에 매도하되, F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270,000,000원의 반환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면서, 매매대금에서 위 보증금을 제한 나머지 125,000,000원을 지급받았다. 피고는 2023. 6. 30. F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23. 3. 21.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.

[인정근거] 다툼 없는 사실, 갑 제1 내지 4호증, 을 제1, 2, 10, 11, 14, 15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

2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가. 사해행위 성립 및 사해의사 등

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(대법원 1998. 5. 12. 선고 97다57320 판결 참조), 채무자의 사해의사 역시 추정된다(대법원 2001. 4. 24.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).

위 인정사실에 의하면, 채무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아파트의 1/2 지분을 처분한 이 사건 증여행위는 사해행위가 되고, 채무자의 사해의사도 인정되며, 수익자 피고의 악의 또한 추정된다. 따라서 이 사건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취소채권자인 원고와 수익자 피고 사이의 관계에서 취소되어야 한다.

나.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

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지분을 증여받은 후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자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금 65,000,000원으로 D에게 49,000,000원을 송금하여 원고에게 그중 25,000,000원을 변제토록 하였고,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 G에게 40,000,000원을 각 변제하였는바, 이와 같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이상 이 사건 증여계약은 책임재산의 감소가 없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.

살피건대, 을 제1 내지 7호증에 의하면, 피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이후 이 사건 아파트를 처분하여 그 대금 중 일부를 D에게 49,000,000원, G에게 40,000,000원을 각 송금한 사실, D는 받은 돈 중 25,000,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 피보전채권에 대하여 일부 변제한 사실, G는 2021. 2. 14.부터 2023. 4. 20.까지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돈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되나, 한편, 갑 제5 내지 10호증,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,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채무자의 채무변제를 위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채무자에게 사해의사가 없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,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.

ú 채무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원고에 대한 채무뿐만 아니라 H 주식회사, 주식회사 I, J 주식회사, K 주식회사, 중소기업은행, L 주식회사, M조합 등에 대하여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. 급기야 채무자는 2023. 8. 14. 파산신청(대전지방법원 2023하단693)을 하였다.

ú G가 채무자에게 수차례 돈을 송금하였다는 사실만으로 G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. 또한 채무자의 위 파산사건에서 G는 채권자목록에 없다.

ú 채무자는 이 사건 증여계약일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1/2 지분뿐만 아니라 서산시 N아파트

O호(이하 서산아파트) 중 1/2 지분을 각 증여하였고, 그 다음 날 피고에게 서산아파트 중 1/2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쳐주었다. 이에 대하여 원고가 2023. 5. 2. 피고를 상대로 사해행위 취소소송(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가단905)을 제기하여 그 소장부분이 2023. 5. 23. 피고에게 송달되자, 피고는 2023. 5. 30. 위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였다.

다.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

(1) 원상회복의 방법 : 가액배상

이 사건 증여계약 후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여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, 원고의 청구에 따라 가액배상에 의한다.

(2) 가액배상의 범위

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의 범위는, ①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는 책임재산의 가액 65,000,000원(= 125,000,000원 × 1/2 지분)과 ②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(200,000,000원과 지연손해금) 중 작은 금액인 65,000,000원을 한도로 이루어진다.

라. 소결론

이 사건 증여계약은 65,000,000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,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65,000,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%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.

3. 결론

원고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.

판사 최보원

별지